

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조 및 제16조 인용조문 수정
 -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”를 “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4조”를 “제5조”로 한다.

제16조제3호 중 “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”을 “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</u></p> <p>제1조(수도사업의 설치)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(이하 법 이라 한다) <u>제4조의</u>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6조(잉여금의 처분)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<u>제12조제4항</u>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</p> <p>4. (생 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평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</u></p> <p>제1조(수도사업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5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6조(잉여금의 처분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7조</u> <u>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상하수도사업소장 최 근 익
연 락 처	(033)330-2363

관계 법령

□ 지방공기업법

제5조(지방직영기업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·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제17조(출자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(出資)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.

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,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.